

〈논 문〉

## 17-18世紀의 韓日間 法律事件考\*

崔 鍾 庫\*\*

### 서 론

인간이 살면서 서로 관계하는 한 법적 사건이 생기게 마련이다. 서로 鎖國을 표방하고 있던 朝鮮王朝(1392-1910)와 도쿠가와(德川) 막부(幕府, 1603-1868)도 이런저런 계기로 相互 交渉을 하고 때로는 법적 사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었다.<sup>1)</sup> 이런 측면을 잘 분석하고 정리하면 외교사는 물론 동아시아 국제법 내지 법사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필자는 근년에 東아시아普通法(East Asian Common Law, *Ostasiatisches Jus Commune*)을 추구하면서<sup>3)</sup>, 한·중·일 3국의 국제질서 내지 국제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중 한·일간의 관계를 법학적으로 조명하면서, 조선조 중후반에 이르는 시기와 일본의 도쿠가와시대 사이의 법적 교섭은 매우 중요하고 흥미있다고 판단되었다. 본고에서는 되도록이면 배경되는 설명은 외교사나 정치사의 몫으로 돌리고, 법적 사건으로 부각된 것만 뽑아 한일관계사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

\* 이 논문은 BK21 '세계 속의 한국법의 발전' 연구의 일환임.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教授

1) 崔鍾庫, *近代韓日法律交流史*, 「한일문화교류기금」, 2000년 9월.

2) Frederick Nelson, *Korea and the Old Orders in East Asia*, Louisiana Univ. Press, 1946; Ronald Toby, *State and Diplomacy in Early Modern Japan*, Princeton Univ. Press, 1983; Kenneth R. Robinson, Centering the King of Choson: Aspects of Korean Maritime Diplomacy: 1392-1592,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9, No. 1, 2000, pp.109-125.

3) 최중고, 동아시아 보통법론, *법학*(서울대) 40권 2호, 1999, 67-85면; Chongko Choi,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Law untill the End of 18th Century*, Seoul, 1999; Chongko Choi, *Foundations of East Asian Jurisprudence*, Nanjing, 2000; 崔鍾庫, 東아시아에서의 法과 正義의 基礎(韓·日 對譯), 日本大學심포지움, 2000. 이러한 필자의 관심에 대한 요약소개로는 양건, 한국과 일본간의 비교법문화론을 위한 서설, *저스티스* 제59호, 2001. 88-106면

## I. 犯陵人 처벌

임진·정유 양란을 겪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국교를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무엇보다 초기 豊臣秀吉이 죽고 德川家康의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신은 전쟁에 군대를 파견한 일은 없으면서 和議를 요청해 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측으로서는 외교관계를 맺되 몇가지 전제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sup>4)</sup> 첫째는 德川家康으로부터 먼저 그러한 요청의 書契가 와야한다는 것과 둘째는 왜란 때 宣陵(成宗 貞顯王妃墓)과 靖陵(中宗墓)을 도굴한 犯陵人을 색출하여 소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延陵府院君 李好閔, 金晬 등이 주장하기를, 德川家康이 한 사람의 군사도 동원하지 않았다면 先陵을 파헤친 자를 잡아서 처벌해야 하며, 이는 양국의 200년간 睦隣을 나타내는 것일뿐 아니라 少軍(將軍)의 이름도 영구히 남을 것이라고 제안한다면, 그 주도권은 조선에 있고 그에 대한 대응여부는 일본에 있으니 그들의 眞意를 알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그 범인이 일본인이라는 확증은 없으나 이 제안으로 교섭의 지연을 피하고, 조선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계책이라고 하였다.<sup>5)</sup>

이러한 조선의 분위기를 파악한 對馬藩主는 범인을 색출하였다 하면서 1606년(宣祖39)에 두 명의 對馬人을 조선에 압송하였다. 이 두 對馬人, 즉 麻吉汁九(37세), 麻多化之(27세)를 심문하여 보니, 이들은 犯人이 아니고 對馬의 감옥에 있던 다른 罪人임이 드러났다.<sup>6)</sup> 이에 대해 이들을 對馬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주장과 이왕 일본이 범인으로 지목해 온 자이니 처벌하자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결국 처형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범집행의 면으로 보면 實體的 眞實보다 名分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4) 국교재개에 관한 찬반론의 과정에 대하여는 三宅英利/손승철 역,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이론과 실천사, 1991, 108-114면.

5)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 下, 1965, 265면, 中村은 선조33년(1500) 정월 禮曹의 보고 가운데 宣陵, 靖陵은 한양의 길목에 있기 때문에 명나라 사람의 왕래가 많아 伐木, 放砲를 금하는 조치가 내려지자 그것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빈번하였다는 사실을 들어(宣祖實錄 권121, 33년 정월 癸亥條) 도굴이 일본인의 소행이 아닐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6) 海行錄, 丙午 11월 17일자.

## II. 國書改作 (柳川一件) 사건

임진왜란(1592) 이후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국서의 왕래는 1607년 강화요청을 한 德川家康의 國書에서부터 1624년 제3차 回答兼刷還使가 휴대하고 귀국한 德川家光에 이르기까지 총 11회에 이르러 실시되었다. 조선은 일본의 신정권 세이이다시 쇼군(征夷大將軍)을 ‘日本國王’으로 승인함으로써 國書의 교환이 이루어졌지만 도쿠가와막부 당사자의 對外觀과는 모순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교섭이 의결된 것은 對馬의 重臣인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 도사나가(智永), 시게오끼(調興) 3대에 걸쳐 ‘日本國王’이라고 국서를 개작하여 상호마찰을 모면하면서 진전되어갔다.

국서개작의 시작은 이미 1606년 회답검쇄환사를 요청하는 도쿠가와와의 국서에서부터 시작하였다. 1606년의 국서가 위작이라는 사실은 이듬해 회답검쇄환사 일행이 對馬에 머무는 동안 부사 慶暹과 하카다(博多)의 聖福寺 僧 慶轍玄蘇가 나눈 대화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간 조선국서의 개작된 내용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개작된 국서를 보면 원본에서 지워진 글자가 총 24자이며 새로 써넣은 글자는 18자이다.<sup>7)</sup> 이러한 국서개작의 행위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1635년 사건이 폭로될 때까지 10여 차례나 이루어졌다. 이 사실은 결국 조선과 일본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양국관계를 논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다.

어쨌든 이 엄청난 사건이 對馬의 내분과정 속에서 폭로되었다. 1631년 柳川調興(1603-84)이 藩主 宗義成에 대하여 所領 및 歲遣船에 대한 권리를 반환하고 君臣의 관계를 끊는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義成은 閣老 土井利勝에 고소하였고, 調興도 또한 제소하여 幕府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 譯官 홍희남 등에 의하여 인솔된 馬上才가 江戸에 체재중이던 1635년 3월 11일, 大慶問에서 三家·諸大名 앞에 德川家光이 참석하여 직접 심문한 결과 國書改作, 쇼군使船의 무단과정이 폭로되었고, 다음날 調興의 敗訴가 결정되었다. 이어서 그는 津輕 土佐守政義領에 유배되었고, 送尾七左衛門, 馬川內臣 및 그 자식들은 쇼군書契改作의 罪로 斬首되었다. 그리고 對馬에 있는 以酏庵의 僧 玄方은 僞國書의 草案을 작성한 죄로 南部 山城守重直領에 유배되었다. 당시 宗義成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國書改作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처벌대상에서 빠졌지만, 이후의 교섭에서 의혹이 생기면 御家斷切

7) 자세한 것은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지성의 샘, 1994: 同人, 조선후기 脫中華의 교린체제, **한일관계사**, 현음사, 1994, 354-357면.

이 경고되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京都 五山の 승려들이 對馬의 以酏庵에 교대로 와서 상주하면서 國書를 감독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以酏庵輪番制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 조선측에서 항의나 특별한 반응은 보이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는 「接待事目錄抄」에 따라 國書에 ‘日本國大君’으로 적기로 정착되었다. 이것이 후일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에 의해 지적되면서 ‘日本國王’으로 하자는 復號論爭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sup>8)</sup>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한일간에 국호를 둘러싼 명분이 처음부터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일양국의 기본입장과 상대방에 대한 시각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 해석된다.

### III. 獨島問題와 安龍福事件

獨島는 지금도 한일간에 문제의 하나있지만 그 분쟁의 역사는 상당히 오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에서 독도를 일컫는 古稱으로는 于山島, 三峰島가 있었다. 于山이 독도의 古稱이었다는 사실은 「高麗史」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의 기록과 나아가 조선시대 후기 및 근대에 이루어진 기록들과 地圖들에 의하여 증명된다.<sup>9)</sup>

그런데 이들 기록들에 의한 獨島=于山島說을 일본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독도를 松島로, 울릉도를 竹島로 認知하고 있었는데, 16세기 네델란드 출신 의사인 지볼트(Siebold)가 架空의 섬인 Argonaute가 울릉도인 줄 잘못 알고 그곳을 竹島로, Dagelet 즉 울릉도를 松島로 잘못 기재한 까닭에 지금까지의 호칭에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독도가 울릉도와 더불어 于山國 領地였던 사실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여 밝혀진 바인데, 독도는 그후 울릉도와 함께 신라의 異斯夫에 의해 신라의 영토로 되었다. 그 후 계속 于山國이란 이름을 쓰면서 高麗初까지 내려 오다가, 고려 태조 13년(930)에 于山國人인 白吉, 土豆가 來獻하자 正朝, 正位라는 官階를 내려주었다.<sup>10)</sup> 于山國이 명실상부하게 중앙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은 고려 仁宗때인데 이때부터 명칭이 于山國에서 羽陵島, 蔚陵島 등으로, 그곳의 지배자의 명칭도 于山國主에서 羽陵城主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支配領屬의 관계도 지방의 한 郡縣과 같은 관계로 바뀌었다.

8) 新井白石의 법사상에 관하여는 奥野彦六, 德川幕府と中國法, 創文社, 1979.

9) 자세한 것은 申芝鉉, 울릉도·독도의 認知와 領有, 獨島研究,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 91-145면; 이상면, Fisheries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Yi Dynasty, 현대국제법론(기당 이한기박사회갑기념), 1978, 301-421면; 백충현, 독도-죽도에 대한 영유권 논의, 일본 동경 국제법연구회 발표논문(1986. 2).

10) 申芝鉉, 위 논문, 144면.

조선왕조의 건국 후 울릉도와 독도의 경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太宗年間에 對馬島主가 島民의 移住를 청원한 일이 있고, 그 전부터 큰 문제였던 倭寇의 위협,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한 背國情犯이 은익할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울릉도와 그 부근 도서에 居民이 살지 못하도록 하고 아울러 이들을 쇄환하는 이른바 空島政策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공도정책은 太宗代에만 실시된 것이 아니라 世宗年間에는 보다 더 강화되었으며 그 후 肅宗朝에는 아래 얘기할 安龍福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울릉도 領有權 분쟁이 야기되었다.

울릉와 독도에 대한 空島政策은 廷臣 중에서 不可함을 들어 반대하는 자가 있는 중에서도 계속 시행되었다. 세종 20년(1438)에는 前護軍 南蒼와 前副司直 曹敏을 茂陵島巡審敬差官에 임명하여 男女 66人을 拿來케 하였으며, 또 수시로 그곳의 情況을 江原道觀察使로 하여금 탐문토록 하였다.<sup>11)</sup> 아울러 그 이듬해에는 함부로 茂陵島에 潛居한 金凡, 貴生 등을 刑曹의 요청에 따라 絞首刑에 처함으로써 보다 潛居者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였다.<sup>12)</sup>

肅宗年間에는 이른바 安龍福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전말은 다음과 같다. 안용복은 東來人으로 일찍이 能嚮軍으로 복무하였고, 또 釜山의 倭館에 출입하여 日本語에도 능통한 인물이었다. 숙종 19년(1693) 봄에 어민 40여명과 울릉도에 잠입하여 고기를 잡다가 때마침 일본 伯耆州 米子の 漁民 大谷·村川家 일행을 만나 서로 싸우다가 朴於屯과 함께 일본으로 잡혀갔다. 「御櫓日記」에 의하면 안용복, 박어둔 두사람은 伯耆州 米子の 大谷家の 어부들에게 잡혀갔는데, 大谷家は 이들을 拉致한 자세한 전말을 藩廳에 보고하는 한편 이들을 억류시켰다. 또 藩廳은 이 사실을 江戶幕府에 보고하여 이들에 대한 조치를 청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5월 26일 江戶幕府에서 兩人을 長崎로 호송하라는 지시를 받아 육로로 동 29일에 출발하여 6월 1일에 鳥府에 도착, 米子城의 城主의 別宅에서 일박하였다. 그리고 6월 7일 鳥府를 출발하여 7월 1일 長崎奉行所에 인도되었다. 그곳에서 취조를 받은 후 8월 14일 對馬島의 使者에게 인도되어 9월 3일 對州에 도착하여 일본인의 입회 아래 부산에서 조선의 接慰官 洪重夏에게 인도됨으로써 일본에서의 억류생활을 끝내고 귀국하게 되었다. 이것이 안용복의 1차 渡海事件의 경과인데, 이것은 안용복이 귀국한 후에 토로한 供草와 더불어 조선 일본간의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분쟁의 惹起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備邊司에서 안용복을 추문하였을 때의 供草에 따르면 안용복은 일본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 어민이 이곳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항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幕府로부터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승인하는 書契를 받아왔으나 도중에 대마도주의 야심

11) 世宗實錄 卷81 世宗20年 4月 甲戌.

12) 世宗實錄 卷84 世宗21年 2月 丙辰.

으로 그것을 탈취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13)</sup> 양국 사이에는 이로부터 울릉도 영유를 둘러싼 외교분쟁이 야기되었다.

대마도주 宗義倫은 안용복사건을 계기로 울릉도를 자신의 영유로 삼고자 안용복, 박어둔 兩人을 東萊에 이첩함과 동시에 조선 禮曹에 書契를 보냈다.<sup>14)</sup> 이에 앞서 이해 3월 조선정부는 노론계가 실각하고 소론계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까지 일본에 대한 유화책을 버리고 강경책으로 선회하였다. 정부는 우선 三陟僉使 張漢相으로 하여금 울릉도를 조사하게 하는 한편 校理 俞集一을 接慰官으로 하여 禮曹參判의 명의로 改撰書契를 전하였다. 그 내용은 竹島가 바로 울릉도인 것을 분명히 하고 일본인이 도리어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의 어민을 잡아간 것인만큼 이는 불법적인 행동이므로 일본인이 다시는 울릉도에 오지 못하게 조치하라는 것이었다. 조선어민이 어로운 곳은 본래 울릉도로서 대나무가 나기 때문에 竹島라고도 한다. 즉 一島二名인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對馬島人도 다 아는 바이다. 그런데 “귀국의 書契 중에 竹島를 귀국지방이라 하고 우리의 邊民이 오는 것을 금지시켜달라고 요구하면서 오히려 일본인이 우리의 땅을 침범하였음을 사과하지 않으니 이는 誠信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조의 書契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울릉도를 탈취하려던 대마도주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差倭인 多田與左衛門은 이 書契를 수리하지 않고 1年餘 「鬱陵」二字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부산에 머물렀다. 이때 대마도주 宗義倫이 죽고 동생 宗義方이 承襲하였으나 나이가 어려 老父 宗義眞이 後見하게 되어 이듬해인 숙종21년(1695) 6월 소환령을 내림으로써 多田은 귀국하고 말았다.

#### IV. 釜山倭館의 賣春사건

부산에 개설된 왜관에는 일본인 남성 약 500인이 살고 있었다.<sup>15)</sup> 남녀간의 애정

13) 이에 대해 일본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1966, 166-174면.

14) 자세히는 李鉉淙, 조선시대의 울릉도·독도 經營, 독도연구, 한국근대사자료연구협의회, 1985, 171-173면.

15) 신숙주, 「해동제국기」(1471)에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호수는 60戶 정도라 하였다. 三浦의 亂 이후 일본인들은 주로 秀吉의 조선침략 당시에는 수십인의 일본인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가 전쟁소식을 듣고 미리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또한 1627년에 後金軍(몽고)의 침입 즉 丁卯胡亂이 발발했을 때 동래부사는 亂이 끝날때까지 퇴거를 권고했지만 왜관측은 거부하였다. 「接待事目錄抄」 丁卯 正月; 「해동제국기」에 관하여는 Kenneth Robinson, The Haedong Chegukki(1447) and Korean Ryukyuan Relations 1389-1471, *Acta Koreana*, Vol. 3, July 2000, pp.87-98.

과 섹스는 때로는 국경을 넘는 법이라 1690년(숙종 16), 1708년(숙종 34)에 이른바 매춘사건이 발생하여 한일양국의 권력적 대응과 문화의 상극상을 보여 주었다.<sup>16)</sup> 朱子學的 윤리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정치적 최고 목표로 삼고있던 당시 조선정부는 국가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交奸’행위는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sup>17)</sup> 이것은 당시 町人文化의 융성과 함께 각지에 遊女가 있어 자유로운 性的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일본과는 대조적이었다. 더구나 일본인과의 교간은 매우 비도덕적으로 보아 조선정부는 엄금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래에서 보듯 1690년과 1708년에 부산 왜관을 중심으로 매춘사건이 발각되어 법률적, 외교적 현안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 1. 1690년 사건

1690년(숙종 16) 2월 23일 저녁 왜관에 사는 井手惣左衛門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나가보니 조선여성이 왜관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어두워지면 나가겠다고 간청하더니 날이 어두워져도 나가지 않고 있다가 다른 일본인들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때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1689년 10월 梅野久右衛門이 조선인이라 생각되는 여자에게 기름과 숨 값으로 銀 65兩을 주었다. 그녀는 4개월 후인 1690년 2월 20일 물품을 가지고 왜관으로 왔다. 그는 은을 돌려주기까지의 4,5일간의 담보로서 그 여성을 잡아 두겠다고 했다. 여기에서 밀무역과 매춘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sup>18)</sup> 4일 후인 24일 밤이 되어도 이 여자는 왜관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가 大工인 利右衛門에게 들켰다. 利右衛門은 久衛門의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여성을 며칠간 빌려주면 자기가 밖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2월 26일 利右衛門에게 있던 여성이 발각되어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다. 1690년 2월 후반에 왜관의 館守는 그 조선 여성을 구류하였다. 3월에서 6월 사이 관수는 東萊府使로부터 문의된 조선여성문제에 대하여 왜관 안에 여성은 한사람도 없다고 답했다. 동래부사는 이미 사건을 알고 있었다. 조선측은 3월에서 7월 동안 왜관에 쌀과 숯의 배달을 금지했

16) 자세한 것은 James Lewis, 釜山倭館における 日朝交流: 賣春事件から見た權力文化の相剋, 中村質編, 鎖國と國際關係, 吉川弘文館, 1997, 269-294면. 그리고 同人, 근세조선인의 일본관: 왜관에 있어서 공무역 접대의 비용을 예시로 하여, 年報朝鮮學 2호, 1992, 1-38면; James Lewis, Leaky Rooves and Another Matters: The Riot as Japanese Negotiating Tactic: The Pusan Japan House(Waegwan) and Choson Korea—Modern Korean Views of Japan through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connections, Ph. D. Dissertation, Univ. of Hawaii 1994.

17) 1613년 2월 일본使臣 柳川景直 一行이 왜관 밖의 물가에서 宴會를 개최한 것을 방지했다고 訓導 朴彦瑞가 처벌되었다. 「光海君日記」 5年 2月條.

18) 1623년(仁祖 원년)7월 4일에는 林素라는 자가 왜관을 통해 밀무역을 하여 7만兩의 私利를 취했다하여 사형시켜 梟示하였다. 仁祖實錄, 元年 6月條.

다. 조선쌀에 의존하고 있던 왜관과 對馬에게 이 배달정지는 심각한 타격이었다. 7월 8일 왜관 안에 약 5개월간 있던 조선여성이 몰래 왜관 밖으로 나오는 작은 배에 타고 있었다. 조선측은 그녀들을 체포하여 9월 29일에 세 여인의 목을 베었다. 3인 가운데 두사람은 위의 사람들이고, 또 한사람은 이전부터 왜관 안에 있던 여자였다.<sup>19)</sup> 조선측은 이들의 목을 왜관 앞에 걸어 두었다.

이 사건에 관한 왜관 관수의 방침은 조선여성들을 왜관에서 내보내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이에 그녀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건에 관계한 일본인들을 대마도로 송환시키려는 것이었다. 왜관 관수는 조선측에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일본인의 有罪性도 부정하고, 일본인을 조선측에 벌하도록 인도하기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었다. 관수 深見丹右衛門의 방침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조선측에는 「倭人作拏騰錄」에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왜관 관수가 여성의 조사를 개시한 2일 전인 1690년 2월 24일 이미 동래부사는 매춘조직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다. 左水營使令 소속의 李明元과 그의 처, 딸, 여동생, 부산에서 온 2명의 寺奴 李進壽와 權祥, 烽軍 徐富祥이 이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되고 있었다. 4명의 남자가 체포되고 취조를 받았다. 이명원은 앞의 이진수와 권상이 1687년부터 매춘에 관계했다고 진술하였다. 권상은 1687년 4월, 4代官인 井手惣左衛門과 2명의 동료가 이진수에게 여자를 팔도록 금을 주었다고 자백했다. 이진수에 따르면 이명원의 처는 한번 왜관에 들어갔다 온 후 수치심 때문에 어디론지 사라졌다. 그는 또 한사람의 공모자로 鄭차돌이란 이름을 냈다. 서부상의 공술에 따르면, 5, 6년전 이명원의 동생에게 이미 죽은 之石이 「水營下居私婢」인 愛今과 함께 나타나 그녀를 왜관의 일본인에게 매춘부로 팔겠다고 했는데, 之石은 4차례 걸쳐 그녀를 왜관에 건네주고 매번 銀 3兩을 받았다. 애금도 포박되어 취조를 받았다. 그녀의 공술은 자기는 1686년에 이명원에게 칼로 위협되어 왜관에 넘겨져 매춘을 하고 銀 6兩을 받았다는 것이다.<sup>20)</sup> 공범자로 이름이 오른 鄭차돌이의 집을 수색하자 일본물품들이 나왔다. 동래부사는 이미 사건관계자를 체포하고 두 사람의 여자가 아직 왜관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부사는 왜관 주변을 포위하고 왜관 관수에게 여성을 인도하도록 요구하였다. 府使는 사건에 관여한 일본인이 그녀들을 살해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는 관수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여성을 수색하도록 했다. 府使 朴紳은 관수가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쌀과 배의 給付를 정지하고 對馬의 다이묘(大名)에게 書狀을 보냈다.<sup>21)</sup> 이 서장은 7월 15일부로 禮曹에서 대마의 宗

19) 倭人作拏騰錄, 서울대 규장각 1296번, 31면. 이 자료 속에 밀무역을 기록한 부분에 관하여는 한일연구 1집, 1972, 239-245면에 수록되어 있다.

20) 倭人作拏騰錄, 4-5면.

21) 朴紳은 1689년 4월 19일에 동래부사에 임명되어 이 사건의 조사를 맡았다. 당시의 경

氏에게 보내졌다. 예조는 李紛伊와 李賤月이란 두 여자를 지명하고 왜관 안의 일본인이 그녀들과 불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 편지는 여성 뿐만 아니라 그녀의 상대방 남자들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고,今後 이런 행위를 규율할 협정을 맺을 것을 요구하였다.<sup>22)</sup> 조선측은 관계자를 인도하는 대가로 왜관 주변의 포위를 해제하겠다고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일본측은 범죄가 생긴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왜관에 여성은 없다고 잡아땀다. 왜관 관수에게 여성을 체포하여 인도한다는 것은 그의 부하를 연좌시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버틸 때까지 버티고 있자 朴紳은 “여인을 관외에 내어주면 우리쪽에서 붙잡겠다”고 하였다. 왜관의 관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를 생각하고 일본인 관계자의 인도를 거부하려고 결심했다. 사건에 관여한 일본인을 조선측에 인도하면 그들은 斬首刑에 처해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備邊司에 부속된 金이라는 役人은 박신의 보고서에 覺書를 붙였다. 金은 이명원과 이진수는 재판이 행해지기 전에 병이 나서 죽었다고 하고 이명원과 같은 자가 나타나는 것은 기강이 해이해진 박신의 책임이라고 비판하였다. 金은 다른 두 사건에 관하여도 조사를 요구하였는데, 하나는 왜관의 通商금지, 또 하나는 범죄자들의 死刑에 관한 것이었다. 金은 일본측이 비타협적 태도를 취하는 책임의 일부는 訓導와 別差, 즉 동래부사와 왜관 사이의 교섭역할을 맡은 두 사람의 관리에게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선측 役人에의 비판은 경상도 관찰사에 의하여서도 행해졌는데, 1690년 6월 23일에 동래부사 박신과 교섭담당의 역인이 조사받기 위하여 구속되었다. 그 다음날 새로운 동래부사의 人選이 천거되었다.<sup>23)</sup> 박신은 6월 30일에 王의 裁可에 의하여 무죄로 되었지만, 같은 날 南塙가 그의 후계자가 되었다. 南塙는 1690년 7월 16일에 취임하였다. 조선조정은 10월 6일에 애금과 기타 두여자(분이, 천월), 서부상, 권상의 목을 잘라 왜관의 문 앞에 걸어 두었다는 보고를 받았다.<sup>24)</sup> 결국 조선측은 사건에 관여한 일본인은 처벌하지 못하였다.

## 2. 1708년 사건

그 후 20년 가량 지난 1708년 1월 15일 조선조정은 부선의 왜관 가까이 있는 甘玉이라는 마을의 여자가 일본인과 ‘交奸’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기록에는 이 여성이 상대방인 일본인에 대하여 동정을 느끼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같은 해

상도 관찰사는 吳始大였다. 倭人作孽臚錄 1960년 4월 12일의 보고, 8면.

22) 同文彙考 24, 附編, 約條條, 국사편찬위원회, 1978, 2220면.

23) 비변사등록 권44, 숙종16년 6월 23일, 24일자 및 승정원일기 제341, 같은 일자.

24) 숙종실록 숙종 16(1690년) 10월 6일자.

對馬藩主에게 보내진 書狀에는 어떤 여성이 스스로 관에 있는 일본인과 ‘綱繆’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이 여성을 처벌한 조선측은 그 情夫人 泉源七을 인도해줄 것을 대마측에 요구하였다. 1709년 4월 13일 조선조정은 대마가 源七의 인도를 거부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마의 주장은 源七은 이미 추방되었고 또 그를 인도한다면 에도막부로부터 견책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였다. 1690년의 사건은 일본측에서 보면 평온을 거둔 것이므로 1708년의 사건도 이와같이 수습하려 했던 것이다. 적어도 대마측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1701년의 조선통신사 일행이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벌칙을 설정하자는 협정의 체결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것을 쇼군에게 직접 호소하겠다고면서 對馬藩主를 위협하였다. 대마번주와 家臣은 조선통신사의 방침에 낭패를 당했는데,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는 대마번주에게 올린 각서에 포함된 「交隣提醒」(1728) 속에서 1690년의 사건과 1708년의 사건에 관한 대마측의 대응을 비판하였다.<sup>25)</sup> 芳洲는 대마의 정책은 당시의 외교상황을 무시한 것이며 조선에의 의존관계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26)</sup> 그는 조선의 법을 일본인도 범해서는 아니된다고 믿고 있었다. 조선측은 과거의 사건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다. 경상도 관찰사 吳始大가 1690년의 사건에 관해 쓴 보고서를 보면, 조선측이 지난 일을 매우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시대는 심지어 1661년과 1662년의 과거의 交奸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때에도 일본인 관계자는 누구도 인도되지 않았다는 사실, 일본인은 狡詐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예상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본측의 교활함이 범죄자를 숨기고 있다고 결론지었다.<sup>27)</sup> 그래서 交奸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쇼군에게 直訴하려는 조선사절의 심정은 이해할 만하다. 통신사가 조선을 출발하기 전 5월 15일 조선조정에서는 犯奸倭人 및 我國人을 同律로 처리한다는 約條를 맺을 것을 결의하였다.<sup>28)</sup> 약조의 체결은 조선국왕이 바라는 바였다. 任守幹의 「東槎日記」는 에도에서의 교섭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대마번주와의 교섭은 일진일퇴를 거듭하였다. 거기에서 3인의 통신사는 이것을 쇼군에게 직소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협정의 草稿를 만들고 이것을 대마의 役人에게 고했다. 대마 역인은 황급하여 즉석에서 교섭에 임해 사절의 요구에 응했다. 그날 밤늦게 그 협정은 대마번주의 認印을 받았다.<sup>29)</sup> 이 협정은 통신사가 귀국하여 보고한 「通信使

25) 雨森芳洲는 한일관계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그에 관하여는 上垣外憲一, 雨森芳洲, 中公新書, 1989; 水田紀文, 國際人雨森芳洲, 雨森芳洲關係資料調查報告書(滋賀縣教育委員會), 1994; 李進熙, 雨森芳洲의 韓國觀, 韓國과 日本文化, 을유문화사, 1982 참조.

26) 雨森芳洲, 交隣提醒, 泉澄一編, 70년.

27) 倭人作孽錄, 15년.

28) 통신사등록 2, 서울대 규장각 자료 총서, 1991, 404-405면.

29) 任守幹, 동사일기, 해행총재, 민족문화추진회, 1986, 96면.

騰錄」에 기재되고, 대마번의 마쓰우라 카쇼(松浦霞沼, 1676-1728)가 쓴 日朝관계 연구서인 「朝鮮通交大紀」속에도 나타나고, 18세기 후반의 조선과 외국과의 통신을 집성한 「同文彙考」에도 나타난다. 「통신사등록」에는 부록으로 任守幹의 일기가 적혀있다. 또 「增正交隣志」에도 기술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 협정은 草梁의 村女가 왜관의 일본인과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목을 벤다는 것, 조선측이 사건에 관여한 일본인의 身柄을 구속하고 처벌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들의 수습을 위하여 1711년의 통신사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협정의 조항은 3개조였다. 제1조는 일본인이 왜관을 나와 조선여성을 ‘強姦’한 경우에는 死刑에 처한다. 제2조는 일본인이 폭력을 사용하여 조선여성을 유혹한 경우는 ‘強姦未成’으로 되어 범인은 永遠流에 처한다. 제3조는 조선여성이 스스로 일본인과 관계를 가지려고 왜관에 들어갔는데 일본인이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하의 벌을 가한다. 협정의 내용은 交奸의 죄를 논한 일본인을 대마가 어떻게 처벌하는가를 규정한 것이었다. 숙종 38년(1712) 5월 5일의 기록에 의하면, 동래부사는 新約條를 돌에 새겨 왜관 마당에 세웠다.

交奸한 조선여성은 위 두 사례에서 보듯이 불행히도 모두 목이 잘랐다. 이러한 처벌은 조선의 일반형법이었던 「大明律」과도 달랐다. 「大明律」에서는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왜관에 들어갈 정도로 강하다고 생각되는 여성과 일본인에게 더럽혀졌다고 생각되는 여성은 목을 잘랐던 것이다. 이명원의 17살의 딸의 목을 베어 걸어 두었다. 그녀가 자기 부친에 의하여 처음 넘겨진 때에는 겨우 13세의 소녀였다. 그러나 새로운 약조는 사태를 상당히 개선시켰다. 1716년의 사건에서는 매춘을 알선한 조선인은 목을 베고 상대방 일본인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대마에 귀국, 2인은 추방되고, 나머지 2인은 이름도 모르고 ‘狡倭情狀 誠極切痛’이라고만 동래부사에게 보고하였다. 정부는 強姦인가 어떤가 의문이 있었지만 여성이 자백하였기 때문에 사형은 면하고 추방에 처한다고 답했다. 매춘을 알선한 조선인 남성에 대한 엄한 처벌은 1717년에 숙종왕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그후 1726년과 1738년에는 매춘을 알선한 조선인은 참수했지만, 여성과 일본인은 추방되었다. 1786년의 사건에서는 “만일 그녀가 유혹되어 매춘을 했다면 「大典通編」에 의하여 杖 100을 때려 추방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실제에는 이 여성은 스스로 자백했다고 결론을 내려 매를 맞지않고 추방되고, 그녀를 매춘시킨 자만 참수하였다.<sup>30)</sup> 교간한 일본인을 대마번이 처벌한다는 약조가 내려짐으로써 조선측은 피해자인 여성을 국가의 안전과 국가적 도덕을 위하여 그 목을 베어 매어 달아야 할 필요는 없어지게 되었다. 양국의 남녀의 육체적 교섭은 위법이라고 일

30) 손승철, 倭人作拏騰錄를 통하여 본 왜관, 港都 釜山 10호, 1993, 36면.

본측이 정식으로 인정함으로써 유교적 윤리의식과 일본계 주민의 증대에 대한 불안은 현저히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貿易口의 하나로 나가사키(長崎)에 중국인, 화란인들이 거주하였고, 그들과 일본여성과의 교류는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다.<sup>31)</sup> 그것을 금지하기보다도 인가하여 통제하는 것이 得策이라고 생각되고 있었다.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1708년 9월 왜관 관수는 조선측에 대하여 일본여성들은 ‘唐人’과 교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예를 들면서 육체적 교섭을 금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지만 개선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sup>32)</sup> 이처럼 외국인의 대한 대응은 한일 양국 사이에 도덕적 규범과 역사적 경험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 V. 「斛一件覺書」사건

대마번이 조선으로부터 지급 받는 쌀은 근세초기에는 通信使 滯在기간 중의 식량과 왜관 소비분, 조약에 규정된 對馬藩主에 대한 下賜米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651년 官營 무역의 支給公木(木綿)의 일부를 公木 1필당 쌀 12斗의 비율로 쌀로 대체하는 ‘授米制’가 실시된 이래 對馬島民을 살리는 중요한 수입품이 되어 매년 二萬石 정도의 쌀이 왜관으로 운반되었다.

1709년 1월, 前年부터 門慰行으로 對馬島에 파견되어 있던 訓導 崔尙集과 別差 韓重億이 조선에서 일본에 주는 쌀의 분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대마 측에서 쌀을 물에 불리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개선을 요구하였다.<sup>33)</sup> 이것이 문제가 되자 1729년에 雨森芳洲가 裁判役으로 부산 왜관에 건너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쌀에 물을 먹이는 수법은 자주 있었다. 대마에서는 물 먹인 조선쌀을 ‘습기 먹은 쌀’(호데지메리)이라 하여 팔았다. 芳洲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근본적으로 문제는 조선과 일본에 쌀을 파는 도량형인 말(斛)이 서로 같지 않다는 데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兩國의 되의 크기와 사용법을 엄밀히 조사하였다. 실은 1637년 1월 19일에 조선과 일본 양쪽의 합의에 의해 왜관의 특수한 斛斗 즉 倭館斗를 만들었지만, 왜관에서 발생한 두차례의 화재로 타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芳洲는 왜관의 쌀 계량법에 대한 조사가 끝난 1709년 3월에 세 개의

31) H. & B. Compilers, *Manners and Customs of the Japanese in the 19th Century*, New York, 1841, Reprint by Charles Tuttle Com., Tokyo, 1973, p.21ff.

32) 邊例集要 권14, 숙종34년 9월조.

33) 宗家記錄, 「裁判記錄」과 이에 대해 자세히는 田代和行, 對馬藩의 조선쌀 輸入과 倭館升, 金泰俊 外, 韓日文化交流史, 민문고, 1991, 470-513면.

複製品을 만들게 했다. 그리고 이에 관한 一切의 문서를 「斛一件覺書」로 적어 남기게 했다.<sup>34)</sup> 통일되지 않은 조선 斛斗를 기준으로 해서는 아니되고, 小斗加算分은 규정수량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 해결책이었다. 어쨌든 도량형 제도의 법적 규제는 국내의 貢納이나 행정, 상거래 질서의 유지에 중요할 뿐아니라 국제거래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사항이고 그 相違는 법적 분쟁을 야기시키기 마련인데, 芳洲의 현명한 접근과 노력으로 國際去來法의 기초를 한일간에 닦았던 것이다.

## VI. 崔天宗 暗殺사건

1763년(英祖 39) 4월 7일 통신사 일행이 에도에서 귀국하는 도중 오사카의 니시혼간지(西本願寺)에 체류하고 있을 때 조선통신사의 都訓導로서 나졸들의 지휘를 담당하던 최천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기타고도오(北御堂)의 棕栲라는 이름의 방에서 경호실에 비치된 槍이 崔의 목에 찔려 있음이 발견되었다. 풍속, 습관 등의 차이 때문에 통신사 일행과 幕府官吏 사이에 의견대립이 가끔 있어 왔지만, 통신사 一員의 살해는 처음 있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히가시마찌 부교쇼(東町奉行所, 경찰서)는 살인사건이라 단정하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에도막부에도 긴급보고가 연달아 보내졌다. 막부의 검찰관이 급거 오사카로 파견되어왔다. 이 무렵 대마도의 하급 통역관 스즈끼 덴조오(鈴木傳藏)라는 사람이 사건 당일부터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시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려 덴조오는 단바(丹波) 방면으로 도망치다가 한 여관에서 체포되었다. 5월 3일에 처형되었다고 보고되었는데, 또 셋슈(攝州)에서 체포되었다는 설도 있고 그 진상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사건이 발생했던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 내용은 두사람이 한 여자를 둘러싼 癡情관계, 조선인삼을 밀수입한 것에 얽힌 배당관계로 인한 살인사건 등으로 화제가 분분하였다. 어쨌든 개인감정에 의한 살인이었기 때문에 조선측의 강력한 요구로 처벌되고 외교적 문제로 더이상 확대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한 가부키(歌舞伎)가 등장하기도 하였다.<sup>35)</sup>

34) 雨森芳洲, 斛一件覺書, 芳洲外交關係資料·書翰集, 關西大出版部, 1982.

35) 첫 작품은 3년 후인 1767년 2월 28일에 개막한 나미끼 쇼조(並木正三) 작, 「세와료리 스즈끼 보초」(世和料理 鱸庖丁)이었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唐人을 접대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관리가 요리집 접대부에게 빠져 놀다가 국가의 중요한 보물을 분실한다. 그것이 唐人들의 간계라는 것을 알아차린 下中の 한 사람인 쓰즈끼 덴시찌(續傳七, 이름의 음을 약간 바꾸어 놓았음)가 보물을 되찾으려다 당인을 살해하고 잘못해서 한사람의 신하까지 죽여 버린다. 살해된 신하의 아들은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해 덴시찌가

## 결론

우리는 위에서 임진왜란이 지나고 한일관계가 통신사를 통하여 정상화되어가는 17세기와 18세기에 발생한 몇가지 사건들과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법률적 노력을 검토해 보았다. 범릉인 처벌과 국서개작사건은 명분과 진실을 찾아 관련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었고,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분쟁은 조선측의 단호한 태도로 울릉도를 탈취하려던 일본측의 계획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부산왜관의 매춘사건은 윤리의식과 형법이 다른 한일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부각되었고 조선측은 조선인 범인을 처벌하였으나 일본인은 처벌하지 못하였다. 한일무역거래에서 도량형의 차이로 제기된 사건은 일본인 외교관의 현명한 노력에 의해 합리적 해결을 보게 되었다. 통신사 일원에 대한 암살사건은 조선측의 단호한 대처로 범인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수습되었다. 아직까지 한일간의 외교관계는 수립되었지만 상세한 공통법규가 성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나마라도 법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외교관계를 유지해나갔던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다룬 문제들 외에도 전통적 한일관계 속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들을 확대 추적해 나간다면 한일간의 국제법 내지 동아시아 보통법의 면모를 더욱 밝혀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숨어있는 절에 뛰어 들지만 主持의 애원 때문에 일단 놓아 주기는 하지만 끝내는 원수를 갚는다는 내용이다. 이틀만에 공연이 금지되었다. 그후 명칭을 개작하여 일반적으로 「漢人韓文手管始」, 「唐人殺害」라는 작품으로 오늘날까지도 알려져 있다. 자세한 것은 李斗鉉, 演劇의 韓日交流, 金泰俊外, 韓日文化交流史, 민문고, 1991, 107-111면.

〈Résumé〉

## Korean-Japanese Legal Disputes during the 17, 18 Centuries

Chongko Choi\*

This paper reviews the Korean-Japanese relations during the 17, 18 Centuries from the viewpoints of law. It aims to find out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and the East Asian Common Law(*Ostasiatisches Ius Commune*). Leaving the background story as a task of the diplomatic history, this writer primarily concentrates on the legal argumentations and the solutions of the occurred issues. The topics are analyzed as following according to the historical sequences.

### I. The Punishment of the Criminals who destroyed the Royal Tombs(1606)

As a prerequisite of the reconciliation with the Tokugawa government, the Choson government required the sending of the criminals who destroyed the royal tomb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s in 1592 and in 1597. Two sent criminals from the Zushima island in 1606 were found out that they were not the real destroyers of the tombs. Nevertheless, after a court discussion at the royal court, they were executed to the death penalty.

### II. Forgery of Diplomatic Documents(1620)

During 1607-1635, the Korean royal documents to Tokugawa Shogun were forged ten times by the Zushima politicians. These intrigues were resorted to the Shogunal court decision. The engaged officials were punished by the Shogun, not severely but nominally. After this event, the monks in Kyoto were sent to keep watch on the royal documents.

### III. Disputes on Dokto Island and the Role of Yongbok Ahn(1693)

Yongbok Ahn was kidnapped in 1693 to Japan during his fight against the

---

\* Professor of Law, SNU

Japanese fishermen around the Dokto island. He argued in Japan that the Dokto island belongs to the Korean territory. He was released back to Korea after an half year custody, and Japan tried to occupy the Island in vein.

#### IV. Punishments of the Adulteress in the Japanese Legation(1690-1708)

At the Japanese Legation in Pusan, there were two sensational events of adulteries between Japanese men and Korean women in 1690 and in 1708. The Confucian-puritanistic Choson government punished the adulteress by beheading to death, but failed to arrest the Japanese 'criminals'. These events show interestingly how different the Korean and Japanese views were on adultery and moral and legal responsibilities.

#### V. Disputes on Weights and Measures(1709)

By the appeal of Korean officials in 1709, the Japanese diplomat Amenomori Hoshu(1668-1755) investigated the Korean weights and measures and compared with the Japanese ones. By such a rational investigation and research, the disputes on the rice importation became clarified by a reasonable understanding.

#### VI. Assassination of Envy Chunjong Choi(1763)

On the way from Edo, in Osaka, a member of the Korean envoy Chunjong Choi was assassinated secretly. The envoy protested severely to detect the criminal. The criminal was arrested by the Bakufu policemen and executed to death. Some Kabuki musicals were produced from this detective story.

#### Conclusion

This research indicates the possible rationality in the process of the above-mentioned six legal disputes. Even though there was no international law in the modern Western sense, the traditional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tried to find the rational wisdom for both sovereign states. This writer wishes to develop this concept of East Asian Common Law and jurisprudence by the further researches.